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

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3. 안 건 요 지: 붙임참조

4. 검 토 의 견 : 붙임참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11월 27일

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

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용조문은 정비하고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(안 제1조).
- 나.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의2).
- 다. 휴무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조정함(안 제3조제2항).
- 라. 시설사용료 감경에 대하여 정함(안 제6조의2).
- 마. 시설사용 시간기준과 성수기의 기간을 조정함(안 별표 1).

3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 계획의 수립과 휴무일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,

주요 내용은

- 제1조는 인용법명을 관계 법률과 맞게 정비하고,
- 제2조2에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계획수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- 제3조는 휴무일을 "월요일"에서 "화요일"로 변경함.
- 제6조는 시설의 면적 표시를 "평과 m²"에서 "m²"의 법정단위로 정비함.
- 제6조의2는 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경 규정을 신설함.

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인용법명의 정비,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숲 체험학습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, 관리의 원활을 위한 휴무일의 조정, 장애인 등의 우대와출산장려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시설사용료의 감경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의 적절한 사항이라 사료됨.
- 그러나,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경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사용료의 감경율과 감경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